

# 구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
|----------|--|

제출년월일 : 2006. 3. .

제출자 : 구미시장

## 1. 제안이유

- 2005년 8월 4일 공포된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인터넷 설문이나 퀴즈대회시 경품 제공 제약에 따른 설문참여율 저조와 홈페이지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어 홈페이지 운영의 시민 참여와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 2005년 9월 구미시UMS시스템(통합메시징서비스)을 구축 운영함에 따라 “사이버 포인트제도”를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시정 참여도에 따른 포인트를 부여 무료 문자서비스의 기회를 제공하여 시정에 대한 관심을 유도코자 함

## 2. 주요내용

- 각종 홈페이지 활성화와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높이하고자 홈페이지 홍보 행사(이벤트) 실시
  - 성적 우수자 및 참여자에게 예산 범위내에서 보상
- 구미시UMS시스템 대시민 무료 서비스
  - 시정 참여도에 따른 사이버포인트를 부여하여 무료문자서비스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 3. 참고사항

-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 구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구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7호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13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내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시민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고 인터넷 설문 및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의견 수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③제2항과 관련하여 인터넷 설문에 응답하는 설문 및 정책 결정 참여자에게는 참여시 600포인트의 사이버 포인트를 부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하여 시홈페이지 방문자에게는 1일 1회에 한하여 30포인트를 부여한다.
- ④그 밖에 시민들의 시정 참여도에 따라 사이버 포인트를 부여하고, 시 홈페이지 회원에게 가입시 1,500포인트, 월 정액 1,500포인트를 부여한다.
- ⑤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부여받은 사이버 포인트는 30포인트 당 문자메시지 1건, 50포인트 당 음성메시지 1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2(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행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또는 시정 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홍보 행사(이벤트)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성적 우수자 및 참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을 할 수 있다.

제2조제4호, 제8조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2조제2항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을 각각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조제5호중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8조제1항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9조중 “국가정보통신보안관련규정”을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개정이유                       |
|------------------------------------------------------------------------------------------|------------------------------------------------------------------------------------------------------------------------------------------------|----------------------------|
| 구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br>관한조례                                                                  | 구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br>관한 조례                                                                                                                   | 제명 띄어쓰<br>기 적용             |
| 제13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br>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br>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br>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br>한다. | 제13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br>①(현행과 같음)                                                                                                                |                            |
| < 신 설 >                                                                                  | ②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시민이<br>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고 인터<br>넷 설문 및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br>있도록 홈페이지에 의견 수렴 창구를<br>운영하여야 한다.                                          | 구미시UMS<br>시스템 무료<br>서비스 지원 |
| < 신 설 >                                                                                  | ③제2항과 관련하여 인터넷 설문<br>응답하는 설문 및 정책 결정 참여자<br>에게는 참여시 600포인트의 사이버<br>포인트를 부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br>활성화를 위하여 시홈페이지 방문자<br>에게는 1일 1회에 한하여 30포인트를<br>부여한다. |                            |
| < 신 설 >                                                                                  | ④그 밖에 시민들의 시정 참여도에<br>따라 사이버 포인트를 부여하고, 시<br>홈페이지 회원에게 가입시 1,500포인<br>트, 월 정액 1,500포인트를 부여한다.                                                  |                            |
| < 신 설 >                                                                                  | ⑤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부여받은<br>사이버 포인트는 30포인트 당 문자메<br>시지 1건, 50포인트 당 음성메시지 1<br>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br>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내에서<br>지원할 수 있다.              |                            |
| < 신 설 >                                                                                  | 제13조2(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br>한 홍보행사)<br>①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br>적인 시정 참여 또는 시정 홍보 등을<br>위하여 홈페이지에 홍보 행사(이벤트)<br>를 할 수 있다.                             | 홈페이지 활<br>성화와 시정<br>참여 유도  |
| < 신 설 >                                                                                  | ②제1항에 의한 성적 우수자 및 참여<br>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br>상을 할 수 있다                                                                                       |                            |

---

## 참 고 자 료

---

-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8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 ①행정기관은 소관법령의 제·개정,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그 밖에 법령에서 공청회·여론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절차를 병행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은 그 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의견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 및 의견제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통계조사,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만족도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공직선거법 제86조

###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3항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기간 동안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4호의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 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거나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개시일 전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4.3.12, 개정 2005.8.4>

1.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전 1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2. 제1호외의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4호

### 4. 직무상의 행위

-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개정 2005.8.4>
-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개정 2005.8.4>
- 다.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개정 2005.8.4>
- 라. 선거일전 60일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업무과업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공무원이나 임·직원, 유관기관·단체의 장과의례적인 범위안의 주민대표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류(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다과류를 말한다)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개정 2005.8.4>
- 마.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